공고 제 88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28일

동탄6동장 의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장 *환	장 *환 1990-03-22	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광역환승로 (여울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10-28